

#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8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23.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,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뚫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, 대상단체 및 지원 총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하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,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(안 제4조)
- 나.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, 다만 법령·조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(안 제5조)
- 다.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, 일정기간 홍보(안 제6조)
- 라. 보조금 지원희망 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(안 제7조)
- 마.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(안 제8조)
- 바. 사후평가,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(안 제18조, 제19조)

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
- 나.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공문(2003. 11. 27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 있어서 “사회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**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)**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2.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**제5조(지원범위)**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**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,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신청 및 접수)**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심의)**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,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결과통보)**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원회 구성)**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사회산업국장, 도시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구의회 의원(2명)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
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

2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

3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12조(회의 운영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**제13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4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5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실비보상)**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8조(보고 등)**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,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별도계정)**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·운영·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《별지》

## 보조금 교부신청서

신청자(명칭)		대표자	
소재지			
사업목적			
보조사업의 내용	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		
사업기간			

### 보조사업의 소요경비

총소요액	교부신청액	자체부담액	기타	비고
사업계획서	별첨(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료 첨부)			

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 
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200 . . .

신청자 : (인)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